

■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용어 정의	2조 1항 (舊 2조 1항)	"회원"이란, 회사와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를 발급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회사와 개인회원규약 을 체결하고 회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발급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2조 3항 (舊 2조 5항)	"콤보서비스"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서비스의 일종으로서, 고객님께서 원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을 목적으로 콤보요금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대상카드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콤보"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서비스의 일종으로, 이용자가 연회비 외에 추가로 콤보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콤보 그룹1"과 "콤보 그룹2"로 구분됩니다.
	2조 4항 (舊 2조 3항)	"콤보요금"이란, 이용자가 콤보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회사에 납부한 콤보 이용 대가를 말합니다.	4) "콤보요금"이란, 이용자가 콤보의 이용을 위해 회사에 납부한 콤보 이용 대가를 말합니다.
	2조 5항 (舊 2조 4항)	이용자가 콤보서비스를 사용함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신한카드 Cube (카드명에 "Cube"라고 명기된 제휴카드 포함, 이하 "대상카드"라 한다.)입니다.	5) "대상카드"란 이용자가 콤보를 받을 수 있는 카드로서, 회사에서 정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를 말합니다.
	2조 6항	없음	6) " 제휴사 "란 회사와 제휴한 업체로서, 콤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2조 7항 (舊 2조 6항)	"콤보서비스 가맹점"이란, 콤보서비스 이용시 혜택 제공이 가능한 가맹점 (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가맹점"이란, 콤보 이용 시 혜택 제공이 가능한 가맹점을 말합니다.
	2조 8항 (舊 2조 7항)	"서비스 신청 사이트"란, 회원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8) "사이트"란 회원이 콤보를 신청하고,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합니다.
약관 명시	3조 3항 (舊 3조 3항)	3)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개월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3)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이 적용 예정일까지 회사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회사는 이러한 통지 외에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게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개인 정보 제공	4조 1~2항	없음	제 4조 개인정보의 제공 1) 회사는 콤보의 제공과 정산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성명,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메일 등)를 콤보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당사 사이트를 통해 제휴사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변경 시 당사 사이트를 통해 공시합니다.
구매 신청	5조 1~4항 (舊 4조 6~8항, 5조 1항)	6) 서비스제공 여부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되고 매출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콤보서비스는 회원당 콤보 종류를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고, 동일한 종류의 콤보는 회원당 1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8) 이미 신청한 콤보서비스 종류를 다른 콤보서비스 종류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1)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서 작성, 사이트 접속,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유선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콤보 신청서 작성, 사이트 접속,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유선을 통하여 콤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되고 매출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콤보를 제공합니다. 단,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콤보의 경우, 제휴사와의 확인을 통해 콤보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회원은콤보 그룹1에서는 최대 2개까지 콤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콤보 그룹 2에서는 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종류의 콤보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4) 이미 신청한 콤보 종류를 다른 콤보 종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콤보 요금	6조 1~2항 (舊 4조 3항)	3) 콤보요금 발생일은 서비스 신청일+14일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고, 선택한 서비스의 가격을 합산하여 도래하는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1) 콤보 신청일+14일 시점에 대상카드 기준으로 콤보 요금이 발생되고, 선택한 콤보서비스의 요금은 합산되어 도래하는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2) 콤보 요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콤보 대상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콤보 매출 발생일 익일에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서 콤보 요금이 출금됩니다.
콤보 제공	7조 1~3항 (舊 4조 1~2항, 5항)	1) 회사가 지정한 가맹점, 서비스 혜택에 대해 회원이 콤보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서비스 사용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서비스 시작일은 신청일 다음날이 됩니다. 5) 서비스 신청 회원에게는 SMS 또는 이메일로 서비스 시작일을 고지합니다.	1) 회사가 지정한 가맹점, 콤보 혜택에 대해 회원이 콤보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콤보 사용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콤보 시작일은 신청일 다음날이 됩니다. 단, 제휴사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증시점부터 콤보 시작일이 적용됩니다. 3) 회사는 콤보 신청 회원에게 SMS 또는 이메일로 콤보 시작일을 고지합니다.
약정 기간	8조 1~2항 (舊 4조 4항)	4) 서비스 약정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다음 년도 1일 이전일까지로 카드 시작일을 기준으로 종료일은 1년간입니다. 단, 대상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콤보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시작일은 동일하나, 대상카드의 카드사용등록 익일로부터 1년간으로 콤보서비스 종료일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13.1.29일 콤보서비스 시작일인 경우 2013.1.29 ~ 2014.1.28까지 발생한 해당 거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대상카드를 2013.2.5일에 사용등록한 경우, 콤보서비스 종료일은 2014.2.5일로 연장됩니다.	1) 콤보 약정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콤보 약정기간은 콤보 시작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단, 대상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콤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시작일은 동일하나, 대상카드의 카드사용등록 익일로부터 1년간으로 콤보 종료일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13.1.29일이 콤보 시작일인 경우 2013.1.29 ~ 2014.1.28까지 발생한 해당 거래에 대해 콤보를 제공하나, 대상카드를 2013.2.5일에 사용 등록한 경우, 종료일은 2014.2.5일로 연장됩니다. 2) 콤보 약정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콤보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만 콤보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기간을 6개월로 별도 명시한 콤보를 2013.1.25시작한 경우, 2013.7.24까지 콤보가 제공됩니다.

구분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공 제한	9조 1~2항 (舊 4조 9~10항)	9) 동일한 가맹점에서 사용한 거래건이 신한카드의 할인, 포인트적립, 무료이용 등과 같은 서비스가 먼저 적용된 경우에는 콤보서비스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중복적용 됨을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0) 각 콤보서비스 선택개수, 사용횟수, 통합한도, 실적조건, 금액조건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가 부여하는 혜택과 이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신청시점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서비스 신청 또는 이용 시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동일한 가맹점에서 사용한 거래 건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청구 할인, 포인트적립/사용, 무료이용 등과 같은 여타 서비스와 콤보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한가지 서비스만 적용됩니다. 단, 사전에 중복적용 됨을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각 콤보 선택개수, 사용횟수, 통합한도, 실적조건, 금액조건 등에 따라 콤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가 부여하는 혜택과 이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신청시점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콤보 신청 또는 이용 시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거절	10조 (舊 6조)	회사는 제 5조에 따른 이용자의 재화 등의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신청 또는 그 의사 전달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신청하였음이 명백하여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법 상, 선량한 사회 풍속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제 5조 등에 따른 이용자의 콤보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신청 또는 그 의사의 전달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신청하였음이 명백하여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법 상, 선량한 사회 풍속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콤보 변경	11조 (舊 4조 11항)	콤보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콤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회사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콤보의 서비스 조건 축소를 신규 출시 후 3년간 하지 않으며, 콤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단, 콤보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회사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요금 청구	12조 1~3항 (舊 5조 2~4항)	2) 청구는 회원 기준으로 청구되고 사용카드 기준으로 카드사용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신청에 따른 콤보요금을 청구하고, 그 가입비 결제방법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합니다. 1. 신용카드 결제(신한카드) 2. 마이신한포인트 4) 포인트 결제 신청 시 적립된 마이신한포인트가 콤보요금 이상인 경우는 포인트에서 공제하고 콤보요금 미만인 경우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시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1) 요금은 본인·가족카드여부 및 카드사용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회원에게 통합 청구됩니다. 2) 회사는 콤보 신청에 따른 콤보요금을 청구하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로 결제합니다. 1. 콤보 대상카드(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2. 마이신한포인트로 결제 3) 포인트 결제 신청시 적립된 마이신한포인트가 콤보요금 이상인 경우는 동 포인트에서 공제하고 콤보요금 미만인 경우 대상카드가 신용카드일때에는, 이용대금 청구시 추가하여 청구하며 대상카드가 체크카드일때에는,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해지 및 환불	13조 1~3항 (舊 7조 1~2항)	1) 콤보서비스 제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콤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 납부한 콤보요금 중 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요금을 일괄 계산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콤보서비스로 받은 할인금액이 콤보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콤보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철회가 가능하고, 콤보요금을 미청구하거나 이미 청구된 경우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 서비스 사용가능 카드가 전부 해지된 경우에는 서비스도 자동해지 됩니다. 단, 서비스의 약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유효카드를 발급받아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콤보서비스의 약정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이용자가 콤보 제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콤보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 납부한 콤보요금 중 혜택(할인 및 무료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등)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요금을 일괄 계산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콤보로 받은 혜택금액이 콤보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콤보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 존재 시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콤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콤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 청구없이 서비스 철회 가능합니다. 단, 콤보 그룹2의 경우, 회원의 바우처, 할인, 멤버십 서비스 등 콤보 이용과 관련하여 제휴사에 지급한 콤보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대상카드가 해지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콤보도 자동해지 되며, 환불은 13조 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콤보의 약정기간 동안 사용가능한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사이트에서 콤보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콤보의 약정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쟁 해결	14조 1~3항 (舊 8조 1~3항)	1)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서비스 상담코너)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콤보의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서비스 상담코너)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재판권 및 준거법	15조 1~2항 (舊 9조 1~2항)	1)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	1)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